

공학대학원 장학 운영기준

제정 2012. 2. 6.
개정 2013. 3.21.
개정 2013. 7. 3.
개정 2014. 7.29.
개정 2014.12.22.
개정 2015.10.13.
개정 2016. 1.28.
개정 2016. 4.28.
개정 2016. 6.13.
개정 2016.10.26.
개정 2016.12.29.
개정 2017.10.31.
개정 2018.06.07.
개정 2020.09.01.
개정 2021.10.26.

제1장 총괄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학대학원 학사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① 입학장학은 신입생 또는 등록자의 소속, 신분 등이 입학 전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정기간 등록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② 일반장학은 성적우수, 봉사활동 등 재학 중 업적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특정 학기에 등록을 지원하거나 감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중복수혜) ① 입학장학 및 일반장학은 중복수혜할 수 없다. 다만, 봉사장학 S,A,B,C는 예외로 한다.(개정2016.1.28.)(개정2016.6.13.)

② 여러 가지 지급사유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수혜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만 적용하여 지급한다.

③ 중복 수혜의 경우도 총계가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장 입학장학

제4조(대상자 및 장학금 지급) 입학장학 대상자와 장학금 지급액을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대 상 자	장학금
1. (삭제 2016.10.26)	(삭제 2016.10.26)
2. 아주대학교 교직원(개정 2017.10.31.)	수업료의 50% 감면
3. 아주대 의료원 및 대우학원 임직원, 자녀가 학부재학생인 공학대학원 입학생 및 재학생(개정 2015.10.13.) (개정 2017.10.31.)	수업료의 30% 감면
4. 아주대 졸업생,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임직원(개정 2015.10.13.)(개정 2017.10.13.)	수업료의 20% 감면
5. 공학대학원 특별과정 및 협약과정 이수생	수업료의 20% 감면
6. 기술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증 소지자 및 품질명장(평생교육진흥원 자격학점인정기준 고시에 의한 국가자격 1등급 해당자)	수업료의 20% 감면
7.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재직자 3명이상 동시 입학 시	수업료의 30% 감면 (개정 2015.10.13.)
8. 7호에서 정한 이외의 회사에서 3명이상 동시 입학 시	수업료의 20% 감면
9.(삭제 2016.10.26)	(삭제 2016.10.26)
10. 기타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장학대상 및 장학금 결정

제5조(협약에 의한 입학장학) 본교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협약체결기관	장학금
(삭제 2021.10.26.)	(삭제 2021.10.26.)
경기중소기업연합회 (개정 2016.6.13.)	- 5명 이상 동시 입학 시 수업료 20% 감면

제6조(입학장학의 유지) 입학장학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① 입학장학 대상자는 입학 당시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군인의 경우는 국가에 대한 공로를 감안하여 재학 중 제대한 경우도 입학장학을 유지한다.
- ③ 입학장학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 장학이 필요한 경우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대상자는 입학장학에 필요한 서류제출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일반장학

제7조(일반장학의 종류와 지급기준) 일반장학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아래 기준에 따

라 지급한다.

종 류	요 건	지급기준
① 봉사장학S	원우회 회장 1인	수업료의 50% 감면
② 봉사장학A	원우회 임원 5인	수업료의 30% 감면
③ 봉사장학B	학과대표 각 1인	수업료의 20% 감면
④ 봉사장학C (신설 2016.06.13.)	학과총무 각 1인 (신설 2016.06.13.)	수업료의 20% 감면 (신설 2016.06.13.)
⑤ 성적우수장학	학과별 직전학기 수석 1인 및 성적우수 1인 (개정 2018.06.07.)	수업료의 20% 감면
⑥(삭제 2016.04.28.)		
⑦ T/A 장학	학과장 추천에 의한 1인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함
⑧ 근로장학	사무실 근로학생 2인	기획처 지급기준에 의함
⑨ 아주희망장학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개정 2016.12. 29.)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함
⑩ 교육연수장학	공학대학원 재학생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함

제8조(일반장학의 집행) 일반장학은 아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여 집행한다.

① 학과 등록생 기준 11명 이상인 경우에는 봉사장학B, 성적우수장학, T/A장학 지급한다.(개정 2016.04.28.)

② 학과 등록생 기준 10명 이하 - 6명 이상인 경우 봉사장학B, 성적우수장학 지급, T/A장학 지급한다.

③ 학과 등록생 기준 5명 이하인 경우 봉사장학B, T/A장학 지급한다.

④ 학과 등록생 기준 3명 이하인 경우 장학혜택 없다.

⑤ 학과 등록생 기준 3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봉사장학 C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06.13.)

⑥ 성적우수장학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발한다.

1. 직전학기 과목낙제(F학점) 없이 6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4.0 이상인자(개정 2016.04.28.)

2. 학과별 성적 최고 우수자 및 성적 우수자. 단 학과별 성적 우수자 1인은 자동으로 학과에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우수자 총 정원을 학과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인원을 배정함(개정 2018.06.07.)

3. 동점자의 경우 취득학점이 많은 자, 취득학기가 많은 자, 과목별 석차백분을 평균이 높은 자, 연장자 순으로 정함(개정 2016.04.28.)(개정 2020.09.01.)

⑦ (삭제 2016.04.28.)

⑧ (삭제)

⑨ 장학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등록금에서 감면한다.

⑩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기존에 받고 있는 학비감면 등의 사유로 인해 실질적으로 장학금 수혜의 실익이 없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증서만 수여받을 수 있다.

- ⑪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으로 수혜를 할 수 없는 경우 후순위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⑫ 상기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일반장학의 지급조건) 성적우수장학 및 학과장 추천장학의 경우 직전학기 평점 3.5 이상이어야 하며, 그 외 장학은 직전학기 평점 3.0 이상인 자로 한다. 단, 장학에 따른 요건의 유지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사운영위원회의 승인하는 경우 특별히 계속 장학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장학수혜 가능학기) 장학수혜가능학기는 이수학점(30학점)을 취득하는 학기까지 수혜할 수 있다. (신설 2016.04.28.)

제4장 부 칙

- 1. 이 운영기준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2012. 2. 6. 부터 시행한다.
- 2. 공학대학원 동문자녀 장학은 2012-1학기 현재 재학 중인 자로부터 한다.

* 시행근거 : 2011-8차 학사운영위원회 회의 2012. 2. 6(월)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13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13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운영기준은 2015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대상자 및 장학금 지급)의 다음 각호의 변경사항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 공무원 : 수업료의 50% 감면에서 30% 감면으로 조정
2.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임직원 : 수업료의 30% 감면에서 20% 감면으로 조정
3.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재직자 3명이상 동시 입학 시 : 수업료의 50% 감면에서 30% 감면으로 조정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1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운영기준은 201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협약에 의한 입학장학)의 변경사항은 2016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1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운영기준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 입학장학금 중 ‘자녀가 학부재학생인 공학대학원 입학생 및 재학생’ 장학금 조정(50%→30%), ‘공무원’ 장학금 조정(30%→20%), ‘사립학교교직원’ 장학금 폐지는 2018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2018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 일반장학 중 ‘성적우수장학의 학과별 성적 우수자’ 선발은 2018학년도 2학기 성적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운영기준은 202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협약에 의한 입학장학)의 변경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 신
입생부터 적용한다.